

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회 부 일 자 : '96. 4. 16. 화순군수

나. 상 정 일 자 : '96. 4. 29. (제44회 임시회 제6차 산업.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송기채

나. 제안이유

- 농어촌 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함.

(농어촌 정비법 제2조 및 부칙제6조)

다. 주요내용

-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법규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제정 됨에 따라 "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"를 "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조례"로 하며 "농지 개량시설"을 "농업 생산 기반시설"로 하고 "농촌근대화촉진법"을 "농어촌정비법"으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개정안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규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 년월일 : 1994. 4. 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농어촌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촉진법 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법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- 농어촌정비법 제9조, 제11조, 제53조, 부칙6조

3. 주요골자

- "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" 를 "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" 로 하고 "농촌근대화촉진법" 을 "농어촌정비법" 으로 하며 "농지개량사업" 을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 으로 하고 "농지개량" 을 "농업생산기반정비" 로 하며 "몽리자" 를 "수혜자" 로 하여 법규정에 맞게 정비

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"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" 를 "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" 로 한다.

제1조 (목적) "농촌근대화촉진법" 을 "농어촌정비법" 으로 하고, "제7조" 를 "제9조" 로 하며, "농지개량사업" 을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 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의 범위) "농지개량사업" 을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 으로 한다.

제12조 (사업비의 부과등) 를 삭제한다.

제13조 (토지의 가격결정) "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"몽리자" 를 "법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"로 한다.

제14조 (일시이용지의 지정) "농지개량사업"을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으로 하고, "농지개량"을 "농업생산기반정비"로 한다.

제15조 (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) "몽리자" 를 "수혜자" 로 한다.

제20조 (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) "법제5조"를 "법제11조"로 하고, "농지개량사업" 을 "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명 : <u>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<u>농촌근대화촉진법</u> (이하 "법" 이라한다)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<u>농지개량사업</u>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<u>농지개량사업</u>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<p>제12조 (사업비의 부과등)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구역내의 법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 원금 및 이자, 사무비 그밖의 이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 보조금 (현물포함) 및 군에서 부담</p>	<p>제명 :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례</p> <p>제1조 (목적) 농어촌정비법 - - - - - - - - 제9조 - - - - - - - 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- - - - - - - - .</p> <p>제2조 (사업의 범위) - - - - - - 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- - - - - 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<p>제12조 (사업비의 부과등) (삭제)</p>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(법제126조제2항에 의한 환지교부대상지)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에는 환지 교부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담 한다.</p> <p>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
<p>제13조 (토지의 가격결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<u>물리자 총회의 위임</u>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 (토지의 가격결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법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
<p>제14조 (일시 이용자의 지정)</p> <p>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<u>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</u>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4조 (일시 이용자의 지정)</p> <p>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— 농업생산기반정비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④ (생략)</p> <p>제15조 (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<u>몽리자</u>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 <p>제20조 (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)</p> <p>법제5조의 자격자는 <u>환지계획인가</u> 이전에 <u>농지개발사업</u>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 및 지적 (가옥 기타 공작물포함) 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제5조의 각호에 기재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 하였을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 (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수혜자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제20조 (권리변동등의 신고 의무)</p> <p>법제11조 - - - - -</p> <p>- - 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법제11조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신. 구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